



보건복지부

보 도 참 고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이후 즉시 사용	배포 일시	2022. 12. 22.(목)		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혜영	(044-202-35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진선	(044-202-3537)

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강화

- 치매안심병원(제10호,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) 신규 지정,
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장 실시 -

-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22일(목)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그간, 전국에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·운영 중이었으며, 이번에 「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」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되었다.
 - 치매안심병원은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*를 집중적으로 치료·관리할 수 있는 시설·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.
 - * 치매에 동반되는 행동심리증상(Behavioral Psychology Syndrome of Dementia, 폭력, 망상 등의 증상)이 심한 환자
 - *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: ('20) 4개소 → ('21) 7개소 → ('22) 10개소
 - 서울(시립서북병원), 전북(전주시립요양병원)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.
- 한편, 이날 개최된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「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('21.1월~'22.12월)」 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(3년, ~'25년)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(폭력, 망상, 배회 등)·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*하는 시범사업이다.

*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△입원기간(지급률: 30일 100%, 31~60일 80%, 61~90일 60%), △퇴원 후 경로(지급률: 가정 100%, 요양기관 90%, 의료기관 80%)를 평가하여 입원기간 내 1일당 45천원을 차등하여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

-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(당초 4개소, '22.7월 이후 3개소 추가)에서 참여 환자(49명)의 입원기간 감소,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,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
- 이에,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△참여 대상기관 확대(치매안심병동 추가), △지급 기준 개선(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(91~120일), 퇴원 후 경로 단순화(가정, 가정외), △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(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원, 치매안심병동 최대 45천원)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운영체계를 개선*하게 되었다.

* <붙임2> 시범사업 개선방안 참고

- 연장 시범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되,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.

- 아울러,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*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승급(1급)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, 운영된다.

*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(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) 제1항 관련 별표1

○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·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*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된다.

*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에 해당되는 간호사, 작업치료사,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

□ 보건복지부 김혜영 치매정책과장은 “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
2.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개요

담당 부서 <시범사업>	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평가운영팀	책임자	팀 장	이기환 (02-6362-3710)
		담당자	연구원	김나현 (02-6362-3717)
<정신건강전문요원>	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	책임자	과 장	한현경 (02-2204-0135)
		담당자	팀 장	박혜진 (02-2204-0335)

붙임1

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

□ 치매안심병원 개요

- (목적)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행동심리증상*을 동반한 치매 환자의 집중치료 지원

* 행동심리증상(BPSD,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) :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, 피해망상 등의 증상

- (지정조건) 「의료법」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(시설, 장비, 인력기준*)을 갖춘 의료기관

* 전문의(신경과, 신경외과, 정신건강의학과), 치매전문교육 이수 간호사, 작업치료사,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배치(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)

□ 지정 현황 ('22년 10개소)

지역	치매안심병원 주요 소개	
수도권		
	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(2022.8. 지정)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37병상 ○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“휴머니티즈*” 케어기법 도입 * 프랑스 치매 전문가인 이브 지네스트와 로젯 마레스커티가 개발한 돌봄 기법	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(2022.8. 지정)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46병상 ○ 지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증·중증 치매환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의료서비스 제공
울산 (신규)		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(2022.12. 지정)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32병상 ○ “어르신이 중심이 되는 병원, 치매환자에게 가족적·의료적·환경적 돌봄 제공 ”

지역	치매 안심병원 주요 소개		
대전·충청권	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(2019.9. 지정)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78병상 ○ “믿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”을 목표로 최고의 자연환경과 요양 요건에서 통합적인 노인의료서비스 제공	 청 풍 호 노 인 사 랑 병 원 (2021.7. 지정)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60병상 ○ “비오는 소리가 들리는 병원, 바람 소리가 들리는 병원, 최적의 자연 친화적·치매친화적 환경 제공	
	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(2019.9. 지정)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133병상 ○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인정(2020년) ○ 국가 “최초의 치매안심병원” 치매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치매환자 치료관리 제공	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(2019.9. 지정)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60병상 ○ “부모의 행복, 자녀들의 안심”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매예방·조기 발견·치료관리체계 구축 선도 기관	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(2019.12 지정)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60병상 ○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인정(2020년) ○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및 전문적인 약물 및 비약물 치료 제공
광주·제주	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(2021.12. 지정)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83병상 ○ “자연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병원“,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근거하여 전문적인 치료 제공	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(2021.12. 지정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○ 치매전문병동 51병상 ○ “제주도내 유일한 치매안심병원”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련 의료서비스 제공	

붙임2

치매전문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행동심리증상(폭력, 망상 등)·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후 지역사회 조기 복귀 지원
- (사업기간) '23년 1월 ~ '25년 12월 (건강보험 인센티브 적용기간: '23.3~'25.12)
※ 시범사업 개선 성과 중간 평가('24.10~12월)를 반영하여 3년차 사업 실시
- (대상기관)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(시설·장비 기준)
- (대상환자) 행동심리증상(BPSD)·섬망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로 신경정신행동검사(NPI-Q), 섬망평가척도(DRS), 치매일상생활력척도(DADL) 등 평가를 통해 의료진이 최종 판단
- (인센티브 적용 대상) 시범사업 기관에 입원 및 퇴원하는 치매환자
※ 퇴원 이후 30일 이내 치매안심병원(다른 요양병원 포함)에 동일 증상(행동심리 증상 또는 섬망)으로 재입원할 경우 인센티브 미지급
- (인센티브 범위) 기관의 인력 수준을 고려 치매안심병원 1일 61,000원, 치매전문병동 1일 45,000원으로 인센티브 기준 차등 적용
- (지급기준) ① 입원 기간, ② 퇴원 후 경로를 평가해 지급을 차등 적용, 시범사업 대상환자 퇴원 이후 지급

<시범사업 개선방안>

구분	현행				개선안				
기관 확대	치매 안심병원(7개 소)				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안심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				
기준 개선	▶ 입원기간				▶ 입원기간 추가 인정(최대 30일, 40%)				
	조건	~30일	31~60일	61~90일	조건	~30일	31~60일	61~90일	91~120일*
	지급률	100%	80%	60%	지급률	100%	80%	60%	40%
	▶ 퇴원 후 경로				▶ 퇴원 후 경로 단순화				
	구분	가정	요양 기관	의료기관	구분	가정	가정 외		
	지급률	100%	90%	80%	지급률	100%	90%		
지급 개선	▶ 입원기간 산식 예) 50일 입원 후 퇴원 시, 80% → 40일 반영				▶ 입원기간 산식 개선 예) 50일 입원 후 퇴원 시, 100% (30일) +80% (16일) →46일 반영				
	▶ 인센티브 범위				▶ 인센티브 범위 차등화				
	1일당 최대 45,000원				1일당 최대 45,000원 (치매안심병동)			1일당 최대 61,000원 (치매안심병원)	

□ 시범사업 운영체계

